

# 소방법 개정 주요 내용

법	현 행	개 정(89.12.30)	비 고
제 29조의 2 (소방시설기 준 적용의 특례)	<p>제29조 제1항이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될 경우에는 기존 특수장소(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 등의 공사중인 특수장소를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유도등·유도표식 및 피난기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p> <p>〈본조신설 81.4.4 법 3413〉</p>		삭 제
제30조 (소방시설기 준 적용의 특례)		<p>① 제29조 제1항의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기존 특수장소(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 등의 공사중인 특수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유도등·유도표식 및 피난기구에 대하여는 당해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특수장소가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을 적용한다.</p> <p>③ 특수장소가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수장소의 전체에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여, 증축전에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부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축부분의 관계자에게 당해 부분에 필요한 소방시설 또는 연소방지·피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소방시설을 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29조 2 개정</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